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18 선고 2017가단524443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의 소]

전 문

원고 1. A

2. B

3. C

4. D

5. E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율

담당변호사 손병기

피고 1. F

2. G

3. H

4. I

5. J

6. K

7. L

8. M

9. N

10. O

11. P

12. Q

13. R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광

담당변호사 이종현

변론 종결 2018. 7. 4.

판결 선고 2018. 7. 18.

주 문

1.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있어서,
 - 가. 피고 F은 15/165 지분 중,
 - (1) 원고 A에게 5/2640 지분에 관하여,
 - (2) 원고 B, C, D, E에게 각 2/2640 지분에 관하여,
 - 나. 피고 G, H, I, J은 각 10/165 지분 중,
 - (1) 원고 A에게 각 5/3960 지분에 관하여,
 - (2) 원고 B, C, D, E에게 각 2/3960 지분에 관하여,
 - 다. 원고 A에게,
 - (1) 피고 K, L은 각 3/36 지분 중 각 5/1260 지분에 관하여,
 - (2) 피고 M은 3/18 지분 중 5/1440 지분에 관하여,
 - 라. 원고 B, C, D, E에게,
 - (1) 피고 K, L은 각 3/36 지분 중 각 2/1260 지분에 관하여,
 - (2) 피고 M은 3/18 지분 중 각 2/1440 지분에 관하여,
 - 마. 피고 N, O, P, Q, R은 각 11/165 지분 중,
 - (1) 원고 A에게 각 5/3600 지분에 관하여,
 - (2) 원고 B, C, D, E에게 각 2/3600 지분에 관하여,
2. 별지 [목록 2, 3] 기재 부동산에 있어서,
 - 가. 피고 F은 6/165 지분 중,
 - (1) 원고 A에게 5/16500 지분에 관하여,

(2) 원고 B, C, D, E에게 각 2/16500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G, H, I, J은 각 4/165 지분 중,

(1) 원고 A에게 각 5/24750 지분에 관하여,

(2) 원고 B, C, D, E에게 각 2/24750 지분에 관하여,

다. 원고 A에게,

(1) 피고 K, L은 각 3/90 지분 중 각 10/15750 지분에 관하여,

(2) 피고 M는 6/90 지분 중 5/9000 지분에 관하여,

라. 원고 B, C, D, E에게,

(1) 피고 K, L은 각 3/90 지분 중 각 2/15750 지분에 관하여,

(2) 피고 M는 6/90 지분 중 각 2/9000 지분에 관하여,

마. 피고 N, O, P, Q, R은 각 4/150 지분1) 중,

(1) 원고 A에게 각 5/22500 지분에 관하여,

(2) 원고 B, C, D, E에게 각 2/22500 지분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 (1) 망 S, 망 T의 자녀인 U은 미혼으로 지내오던 중 2014. 8. 25. 사망하였다.
- (2) ① 망 U의 형제인 망 V(1993. 6. 16. 사망)의 배우자가 피고 F(피고 1), 망 V의 자녀들이 피고 G·J·H·I(피고 2 내지 5)이고, ② 망 U의 형제인 망 W(2002. 10. 1. 사망)의 자녀들이 망 X·Y·피고 M(피고 8)이며, 망 X(2009. 12. 23. 사망)의 배우자가 Z 및 자녀들이 피고 K·L(피고 6, 7)이고, ③ 망 U의 형제인 망 AA(2000. 1. 13. 사망)의 자녀들이 피고 N·O·P·Q·R(피고 9 내지 13)으로서, 이들이 망 U의 사망에 따라 망 V·망 W·망 AA의 대습상속인으로서 망 U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 (3) 한편 원고들은 망 AB(1944. 11. 8. 사망)의 손자녀인데, '망 U의 형제인 위 (2)항의 망 V·망 W·망 AA 3인 외에 원고들의 조부인 망 AB 역시 망 U의 형제로서 대습상속인이 있던 자이어서 원고들 역시 망 U의 공동상속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망 U 소유의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 및 [목록 2, 3] 기재 부동산 중 각 40/100 지분에 관한 Y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

Y은 망 U이 생존하고 있던 상황에서 망 U 명의의 위임장과 증여계약을 위조하여 2014. 3. 28. 망 U 소유의 [목록 1] 기재 부동산 및 [목록 2, 3] 기재 부동산 중 각 40/100 지분(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3. 26.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Y에 대하여 2016. 10. 27. 망 U 명의의 위임장 및 증여계약서 위조·행사 등의 범죄사실로 유죄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892)이 선고되어 2017. 2. 3. 상고기각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었다].

다. 피고들의 Y에 대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송 제기 및 이에 따른 피고들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

- (1) 망 U이 2014. 5. 26. Y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35891)을 제기하였다가 소송계속 중 사망함에 따라 피고들이 2014. 10. 30. 망 U의 공동상속인으로서 소송절차수계신청을 하여, 2017. 2. 8.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Y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관련서류가 위조되어 마쳐진 원인무효의 등기라는 이유로 'Y은 공동상속인들인 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4] '④ 기 등기 지분'란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피고 K·L는 [목록 1] 기재 부동산 중 각

1/18 지분 및 [목록 2, 3] 기재 부동산 중 각 1/45 지분에 관하여, 피고 M는 [목록 1] 기재 부동산 중 1/9 지분 및 [목록 2, 3] 기재 부동산 중 각 2/45 지분에 관하여)'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어 2017. 2. 23.경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판결에 따라 2017. 5. 31.부터 2018. 4. 23.까지에 걸쳐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목록 4] '④ 기 등기 지분'란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피고 K·L·M는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판결에서 청구인용된 각 지분 외에 Y이 상속결격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Y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부분도 각 상속하게 됨에 따라 피고 K·L 앞으로 [목록 1] 기재 부동산 중 각 1/36 지분 및 [목록 2, 3] 기재 부동산 중 각 1/90 지분에 관하여, 피고 M 앞으로 [목록 1] 기재 부동산 중 1/18 지분 및 [목록 2, 3] 기재 부동산 중 각 1/45 지분에 관하여 추가로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원고들 앞으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0, 11호증, 을 제1 내지 5, 7,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선대인인 망 AB가 망 U의 형제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제8호증의 1 내지 5, 제9호증, 제10호증의 1 내지 5,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 U의 부친 S에 대한 제적등본(갑 제1호증의 3, 4, 제10호증의 2, 3)에 S의 원적지 및 출생지, S의 아들이자 망 U의 형제인 망 V·망 AA에 대한 각 제적등본(갑 제1호증의 2, 4, 을 제10호증의 1, 3)에 이들의 각 본적지 및 출생지가 모두 '평남 순천군 AC'로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들의 부친 AD에 대한 제적등본(갑 제3호증의 2, 제8호증의 5)에 '전 호주 부친 AB'라는 기재와 함께 원적지 및 출생지가 '평남 순천군 AC'로 망 U의 부친 S이나 형제들인 망 V·망 AA의 원적지 및 출생지와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 ② 망 U의 부친 S는 'AE' 종중의 후손인데, 'AE' 종중의 족보(갑 제1호증의 1, 제8호증의 2)에 원고들 부친 AD의 부친인 AB가 S의 아들로 등재되어 있고, AF 종친회 중앙본부 회장 AG·사무총장 AH이 '원고들의 조부인 AB가 S의 아들이다'라는 취지의 확인을 하여 주고 있기도 한 점, ③ 망 U이 고령과 뇌경색 등으로 인지 및 판단능력이 저하된 채 입원 중인 상태에서 망 U의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Y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상황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하여 2014. 4월경 피고 M·N 등이 참석한 자리에 원고 B·C·E도 연락을 받고 동석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의 선대인 AB는 S의 아들로써 망 U의 형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한 원고들 및 피고들의 상속지분에 관하여(앞서 본 인정사실과 증거들에 의하여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1) 망 U이 2014. 8. 25. 사망함에 따라 그 재산을 망 U의 형제인 망 AB·망 V·망 W·망 AA 4인이 각 1/4 지분씩 상속하게 되는데[피고들은 'AE' 종중의 족보(갑 제1호증의 1, 제8호증의 2)상에 망 AB와 마찬가지로 S의 아들로 기재되어 있는 AI·AJ·AK 역시 망 U의 형제로써 그 상속인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족보 외에도 제적등본 등에 의하여 망 U이 사망한 2014. 8. 25. 당시 자녀 등 대습상속인이 존재 및 생존하고 있음이 입증되는 원고들이나 피고들의 선대들과는 달리 위 족보에 S의 아들로 기재되어 있는 된 AI·AJ·AK나 그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이 망 U 사망 당시 존재 및 생존하고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들이 Y을 상대로 망 U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진행하여 청구인용의 이 사건 판결이 선고된 사건에서 망 U의 형제들로서 망 U 사망 당시 대습상속인들이 있는 자들을 망 V·망 W·망 AA로 한정하여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였던 사정까지 고려하면 위 족보에 S의 아들로 기재되어 있는 된 AI·AJ·AK나 그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이 망 U의 상속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망 AB·망 V·망 W·망 AA 모두가 망 U 사망 이전에 이미 사망함에 따라 각 상속지분은 그 배우자 및 자녀가 대습상속이 되었고 상속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망 AB의 상속지분 1/4 부분

① 망 AB가 1944. 11. 8. 사망함에 따라 AD이 호주상속과 함께 AB의 재산을 상속하였는데 AD 또한 2006. 12. 28. 사망함에 따라 망 AB의 상속지분(1/4)은 자녀인 원고 B 등에게 아래와 같이 상속되었다.

AL(처)	$1/4 \times 3/15 = 3/60$	3/60
AM(자)	$1/4 \times 2/15 = 2/60$	2/60
원고 B(자)	$1/4 \times 2/15 = 2/60$	2/60
원고 C(자)	$1/4 \times 2/15 = 2/60$	2/60

AL(처)	$1/4 \times 3/15 = 3/60$	3/60
원고 D(자)	$1/4 \times 2/15 = 2/60$	2/60
원고 E(자)	$1/4 \times 2/15 = 2/60$	2/60
원고 A(자)	$1/4 \times 2/15 = 2/60$	2/60

그 후 AL가 2016. 4. 4. 사망함에 따라 AL의 상속분 3/60은 그 자녀인 원고 A(AL는 AD이 재혼한 배우자로서 나머지 원고들의 모친이 아니다)가 추가로 상속하였다.

원고 A(자)	$2/60 + 3/60 = 5/60$	5/60
---------	----------------------	------

② 결국 망 AB의 상속지분은 최종적으로 아래와 같이 상속되었다.

1	A	5/60
2	B	2/60
3	C	2/60
4	D	2/60
5	E	2/60
소외	AM	2/60

(나) 망 V 상속지분 1/4 부분

망 V가 1993. 6. 16. 사망함에 따라 망 V의 상속지분(1/4)은 그 배우자인 피고 F 등이 아래와 같이 상속하였다.

1	F(처)	$1/4 \times 3/11 = 3/44$	3/44
2	G(자)	$1/4 \times 2/11 = 2/44$	2/44
3	H(자)	$1/4 \times 2/11 = 2/44$	2/44
4	I(자)	$1/4 \times 2/11 = 2/44$	2/44
5	J(자)	$1/4 \times 2/11 = 2/44$	2/44

(다) 망 W의 상속지분 4/1 부분

① 망 W이 2002. 10. 1. 사망함에 따라 망 W의 상속지분(1/4)은 그 자녀들인 X, Y, 피고 M 중 상속결격자인 Y를 제외한 나머지 2인이 아래와 같이 상속하였다.

X(자)	$1/4 \times 1/2 = 1/8$	1/8
피고 M(자)	$1/4 \times 1/2 = 1/8$	1/8

그런데 X이 2009. 12. 23. 사망함에 따라 그 상속지분 1/8은 망 X의 자녀인 원고 K 등이 아래와 같이 상속하였다.

Z(처)	$1/8 \times 3/7 = 3/56$	3/56
피고 K(자)	$1/8 \times 2/7 = 2/56$	2/56
피고 L(자)	$1/8 \times 2/7 = 2/56$	2/56

② 결국 망 W의 상속지분은 피고 K·L 등이 아래와 같이 상속하였다.

6	K	2/56	2/56
7	L	2/56	2/56
8	M	$1/8 \times 7/7 = 7/56$	7/56
소외	Z	3/56	3/56

(라) 망 AA의 상속지분 1/4 부분

망 AA가 2000. 1. 13. 사망함에 따라 망 AA의 상속지분(1/4)은 그 자녀인 피고 N 등이 아래와 같이 상속하였다.

9	N(자)	$1/4 \times 1/5 = 1/20$	1/20
10	○(자)	$1/4 \times 1/5 = 1/20$	1/20
11	P(자)	$1/4 \times 1/5 = 1/20$	1/20
12	Q(자)	$1/4 \times 1/5 = 1/20$	1/20
13	R(자)	$1/4 \times 1/5 = 1/20$	1/20

(2) 소결

따라서 망 U 소유의 [목록 1] 기재 부동산은 원고들과 피고들에게 최종적으로 아래와 같이 상속되었다.

① 원고들의 상속지분

1	A	5/60	$3850/46200 (=5 \times 770/60 \times 770)$	망 AB의 상속인
2	B	2/60	$1540/46200 (=2 \times 770/60 \times 770)$	
3	C	2/60	$1540/46200 (=2 \times 770/60 \times 770)$	
4	D	2/60	$1540/46200 (=2 \times 770/60 \times 770)$	
5	E	2/60	$1540/46200 (=2 \times 770/60 \times 770)$	
소외 AM	2/60	$1540/46200 (=2 \times 770/60 \times 770)$		

② 피고들의 상속지분

1	F	3/44	$3150/46200 (=3 \times 1050/44 \times 1050)$	망 V의 상속인
2	G	2/44	$2100/46200 (=2 \times 1050/44 \times 1050)$	
3	H	2/44	$2100/46200 (=2 \times 1050/44 \times 1050)$	
4	I	2/44	$2100/46200 (=2 \times 1050/44 \times 1050)$	
5	J	2/44	$2100/46200 (=2 \times 1050/44 \times 1050)$	
6	K	2/56	$1,650/46200 (=2 \times 825/56 \times 825)$	망 W의 상속인
7	L	2/56	$1,650/46200 (=2 \times 825/56 \times 825)$	
8	M	7/56	$5,775/46200 (=7 \times 825/56 \times 825)$	
9	N	1/20	$2310/46200 (=1 \times 2310/20 \times 2310)$	망 AA의 상속인
10	O	1/20	$2310/46200 (=1 \times 2310/20 \times 2310)$	
11	P	1/20	$2310/46200 (=1 \times 2310/20 \times 2310)$	
12	Q	1/20	$2310/46200 (=1 \times 2310/20 \times 2310)$	
13	R	1/20	$2310/46200 (=1 \times 2310/20 \times 2310)$	
소외 Z	3/56	$2475/46200 (=3 \times 825/56 \times 825)$	망 W의 상속인	

다. [목록 2, 3] 기재 부동산에 관한 원고들 및 피고들의 상속지분에 관하여(앞서 본 인정사실과

증거들에 의하여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1) [목록 2, 3] 기재 부동산에 관한 망 U 소유의 지분은 각 40/100이고, 이를 망 U의 형제들 4인이 아래와 같이 각 1/4씩 상속하게 되었다.

AB	오빠	1/4	$1/10 (= 40/100 \times 1/4)$
V	오빠	1/4	$1/10 (= 40/100 \times 1/4)$
W	동생	1/4	$1/10 (= 40/100 \times 1/4)$
AA	동생	1/4	$1/10 (= 40/100 \times 1/4)$

그런데 망 AB 등이 망 U 사망 이전에 이미 사망함에 따라 각 상속지분은 그 배우자 및 자녀가 대습상속하게 되었고, 그 상속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망 AB의 상속지분 1/10 부분

① 망 AB의 상속지분(1/10)은 자녀인 원고 B 등에게 아래와 같이 상속되었다.

AL(처)	$1/10 \times 3/15 = 3/150$	3/150
AM(자)	$1/10 \times 2/15 = 2/150$	2/150
원고 B(자)	$1/10 \times 2/15 = 2/150$	2/150
원고 C(자)	$1/10 \times 2/15 = 2/150$	2/150
원고 D(자)	$1/10 \times 2/15 = 2/150$	2/150
원고 E(자)	$1/10 \times 2/15 = 2/150$	2/150
원고 A(자)	$1/10 \times 2/15 = 2/150$	2/150

그 후 AL가 2016. 4. 4. 사망함에 따라 AL의 상속지분 3/150에 대해서는 그 자녀인 원고 A가 추가로 상속하였다.

원고 A(자)	$2/150 + 3/150 = 5/150$	5/150
---------	-------------------------	-------

② 결국 망 AB의 상속지분은 최종적으로 아래와 같이 상속되었다.

1	A	5/150
2	B	2/150
3	C	2/150
4	D	2/150
5	E	2/150
소외	AM	2/150

(나) 망 V의 상속지분 1/10 부분

망 V의 상속지분(1/10)은 피고 F 등이 아래와 같이 상속하였다.

1	F(처)	$1/10 \times 3/11 = 3/110$	3/110
2	G(자)	$1/10 \times 2/11 = 2/110$	2/110
3	H(자)	$1/10 \times 2/11 = 2/110$	2/110
4	I(자)	$1/10 \times 2/11 = 2/110$	2/110
5	J(자)	$1/10 \times 2/11 = 2/110$	2/110

(다) 망 W 상속지분 1/10 부분

① 망 W의 상속지분(1/10)은 그 자녀들인 X, Y, 피고 M 중 상속결격자인 Y을 제외한 나머지 2인이 아래와 같이 상속하였다.

X(자)	$1/10 \times 1/2 = 1/20$	1/20
M(자)	$1/10 \times 1/2 = 1/20$	1/20

그런데 X이 2009. 12. 23. 사망함에 따라 망 X의 상속지분 1/20은 그 자녀인 피고 K 등이 상속하였다.

Z(처)	$1/20 \times 3/7 = 3/140$	3/140
피고 K(자)	$1/20 \times 2/7 = 2/140$	2/140
피고 L(자)	$1/20 \times 2/7 = 2/140$	2/140

② 결국 망 W의 상속지분은 피고 K 등이 최종적으로 상속하였다.

6	K	$2/140$	$2/140$
7	L	$2/140$	$2/140$
8	M	$1/20 \times 7/7 = 7/140$	$7/140$
소외	Z	$3/140$	$3/140$

(라) 망 AA 상속지분 $1/10$ 부분

망 AA의 상속지분($1/10$)은 자녀인 피고 N 등이 아래와 같이 상속하였다.

9	N(자)	$1/10 \times 1/5 = 1/50$	$1/50$
10	○(자)	$1/10 \times 1/5 = 1/50$	$1/50$
11	P(자)	$1/10 \times 1/5 = 1/50$	$1/50$
12	Q(자)	$1/10 \times 1/5 = 1/50$	$1/50$
13	R(자)	$1/10 \times 1/5 = 1/50$	$1/50$

(2) 소결

따라서 망 U 소유의 [목록 2, 3] 기재 부동산은 원고들과 피고들에게 최종적으로 아래와 같이 상속되었다.

① 원고들의 상속지분

1	A	$5/150$	$1540/46200 (=5 \times 308/150 \times 308)$	망 AB의 상속인
2	B	$2/150$	$616/46200 (=2 \times 308/150 \times 308)$	
3	C	$2/150$	$616/46200 (=2 \times 308/150 \times 308)$	
4	D	$2/150$	$616/46200 (=2 \times 308/150 \times 308)$	
5	E	$2/150$	$616/46200 (=2 \times 308/150 \times 308)$	
소외 AM	$2/150$	$616/46200 (=2 \times 308/150 \times 308)$		

② 피고들의 상속지분

1	F	3/110	1260/46200(=3×420/110×420)	망 V의 상속인
2	G	2/110	840/46200(=2×420/110×420)	
3	H	2/110	840/46200(=2×420/110×420)	
4	I	2/110	840/46200(=2×420/110×420)	
5	J	2/110	840/46200(=2×420/110×420)	
6	K	2/140	660/46200(=2×330/140×330)	망 W의 상속인
7	L	2/140	660/46200(=2×330/140×330)	
8	M	7/140	2310/46200(=7×330/140×330)	
9	N	1/50	924/46200(=1×924/50×924)	망 AA의 상속인
10	O	1/50	924/46200(=1×924/50×924)	
11	P	1/50	924/46200(=1×924/50×924)	
12	Q	1/50	924/46200(=1×924/50×924)	
13	R	1/50	924/46200(=1×924/50×924)	
소외 Z	3/140	990/46200(=3×330/140×330)	망 W의 상속인	

라. 피고들의 원고들 상속분 침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은 망 U의 상속인으로서 Y을 상대로 진행한 소송에서 선고·확정된 이 사건 판결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목록 4] '④ 기 등기 지분'란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이는 망 U의 상속인인 원고들을 공동상속인에서 제외하고 피고들만이 망 U의 공동상속인들인 것처럼 하여 소송을 진행하여 선고된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피고들은 [목록 4] '⑤ 초과등기된 지분'란 기재 지분과 같이 피고들이 상속받아야 할 지분을 초과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목록 4] '⑥ 이전할 지분'란 기재 원고들의 각 상속분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목록 4] '⑥ 이전할 지분'란 기재 원고들의 각 상속분은 원고들이 각 상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제척기간 도과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Y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상황에서 원고 C·E·B이 2014. 4월경 그에 관한 민사소송 제기를 위한 회의에도 직접 참석하였고, 원고 B·D은 Y의 망 U 명의의 증여계약서 등 위조 등에 관한 형사재판(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5067)에 2015. 10. 28.과 2015. 12. 18. 각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하기도 하였으며, 피고들이 망 U을 수계하여 Y을 상대로 진행하고 있던 민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55891)에서 Y으로 하여금 2016. 11. 8. 제출하도록 Y에게 유리한 내용의 사실확인서도 작성하여 주었던 이상, 피고들이 망 U이 제기한 위 민사소송을 수계한 날인 2014. 10. 30.부터 상속권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인 3년이 경과되어 원고들의 상속권회복청구권은 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속권회복청구권은 상속권 침해란 안 날로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하는데, 이 사건에서 피고들이 원고를 제외한 채 자신들만이 망 U의 공동상속인들임을 이유로 소송을 수계하여 진행하였다는 것만으로 피고들이 원고들의 상속권을 침해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그 소송에서 이 사건 판결이 선고·확정되어 그에 따라 원고들이 상속한 지분에 관하여까지 피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야 비로소 피고들이 원고들의 상속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원고들이 피고들의 Y을 상대로 한 소송수계나 그 진행 상황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들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된 이 사건 판결이 2017. 2. 8.에야 선고되고 2017. 2. 23. 확정된 때로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인 2017. 12. 28.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상 피고들의 제척기간 도과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1)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있어서, (가) 피고 F은 15/165 지분 중, ① 원고 A에게 5/2640 지분에 관하여, ② 원고 B, C, D, E에게 각 2/2640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G, H, I, J은 각 10/165 지분 중, ① 원고 A에게 각 5/3960 지분에 관하여, ② 원고 B, C, D, E에게 각 2/3960 지분에 관하여, (다) 원고 A에게, ① 피고 K, L은 각 3/36 지분 중 각 5/1260지분에 관하여, ② 피고 M는 3/18 지분 중 5/1440 지분에 관하여, (라) 원고 B, C, D, E에게, ① 피고 K, L은 각 3/36 지분 중 각 2/1260 지분에 관하여, ② 피고 M는 3/18 지분 중 각 2/1440 지분에 관하여, (마) 피고 N, O, P, Q,

R은 각 11/165 지분 중, ① 원고 A에게 각 5/3600 지분에 관하여, ② 원고 B, C, D, E에게 각 2/3600 지분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또한 (2) [목록 2, 3] 기재 부동산에 있어서, (가) 피고 F은 6/165 지분 중, ① 원고 A에게 5/16500 지분에 관하여, ② 원고 B, C, D, E에게 각 2/16500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G, H, I, J은 각 4/165 지분 중, ① 원고 A에게 각 5/24750 지분에 관하여, ② 원고 B, C, D, E에게 각 2/24750 지분에 관하여, (다) 원고 A에게, ① 피고 K, L은 각 3/90 지분 중 각 10/15750 지분에 관하여, ② 피고 M는 6/90 지분 중 5/9000 지분에 관하여, (라) 원고 B, C, D, E에게, ① 피고 K, L은 각 3/90 지분 중 각 2/15750 지분에 관하여, ② 피고 M는 6/90 지분 중 각 2/9000 지분에 관하여, (마) 피고 N, O, P, Q, R은 각 4/150 지분 중, ① 원고 A에게 각 5/22500 지분에 관하여, ② 원고 B, C, D, E에게 각 2/22500 지분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김태훈

별지

1) 2018. 5. 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정정한 청구취지 제2의 마.항에 기재된 '1/15'(= 11/165), '11/165'는 '4/150'의 오키이다.